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- 365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3 - 65호(2023. 2. 2.)로
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
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변경 사항

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내 용	○ 작동레버 방식 추가 ○ 제작 재질 추가 - (기존) 아연각판 ○ 공장 소재지 변경 -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41	○ 작동레버 방식 추가 - 설치현장 상황에 따라 작동레버의 구조방식 및 위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적용 ○ 제작 재질 추가 - (추가) 스테인레스 ○ 공장 소재지 변경 -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277	

2. 기타 사항

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
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등록되어
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